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김성우, 전수곤, 김영래
배재만, 구교강, 도희재, 황숙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3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수에 관한 규정 수정(안 제2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을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64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0조제3항 ----------.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생략) ③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3조----------. ④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